

# 謙齋 朴聖源의 禮學과 『禮疑類輯』의 성격

김 윤 정 \*

1. 머리말
2. 謙齋 朴聖源의 禮學
  - 1) 생애와 활동
  - 2) 예학사상
3. 『禮疑類輯』의 편찬과 성격
  - 1) 편찬과 간행
  - 2) 구성과 성격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의 예학은 17세기 禮訟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많은 예설이 축적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예서들이 편찬되었다. 18세기 예학은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조선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예 담론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성리학 질서가 확산되고 예학이 발전할수록 예제는 더욱 세분화 ·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둘러싼 담론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18세기에는 다종 다량의 예서가 편찬되었고, 예의 체계화와 보편화가 진행되었다.<sup>1)</sup>

그렇지만, 17세기 예학 연구의 성과에 비해 18세기 예학에 대한 연구는 제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張東宇, 2008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색-『朱子家禮』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13 ; 김윤정, 2011 『18세기 禮學 연구 -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적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에 편찬된 예서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sup>2)</sup> 여전히 실학자들의 예학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실학자의 예학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조선의 예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18세기 예학의 새로운 경향은 18세기 조선사회를 설명하는 다양한 측면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謙齋 朴聖源(1697~1767)의 『禮疑類輯』을 통해 18세기 예학의 전개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성원은 老論-洛論의 대표적인 학자인 陶庵 李縉(1680~1746)의 高弟로서, 이재의 心性論과 禮學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재 사후 南塘 韓元震(1682~1751)과의 『寒泉詩』 논쟁에서 스승을 대신하여 湖論의 人物性異論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박성원이 사망한 후 이재의 도통은 農巖 金昌協(1651~1708)의 손자인 漢湖 金元行(1702~1772)에게로 이어졌다. 박성원은 道統에서 밀려나면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가 이재의 예학을 계승한 측면이나 그의 예서인 『예의유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sup>

그런 만큼 박성원의 생애와 예학사상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성원은 학자와 관료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이재의 문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의 예학사상은 이재의 예설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8세기 조선의 다양한 變禮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예의유집』의 편찬과 성격을 통해 18세기 예학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승연, 1999 「조선조 예학사에 있어서 「四禮便覽」의 위치」, 『동양예학』3 ; 이승연, 2004 「進菴 李滄浩 『四禮類會』에 관한 일고찰」, 『동양예학』13 ; 이현진, 2010 「碩齋 尹行恉의 禮學과 喪禮 인식- 『泣血錄』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34. 최근 韓國禮學叢書 138권이 解題와 함께 발간되어 예학 연구에 발전적 기여를 하고 있다.

3) 실학자의 예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裨相賢, 1993 「星湖 李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10 ; 張東宇, 1998 「茶山 禮學의 研究 : 「儀禮」「喪服」과 「喪禮四箋」「喪期別」의 比較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迎春, 1998 「茶山의 禮學과 服制禮說」, 『조선시대사학보』5 ; 박종천, 2001 「『國朝典禮考』에 나타난 茶山 丁若鏞의 禮論」, 『한국사상사학』16 ; 李倬珪, 2005 「실학의 예론 : 성호학파의 예론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4.

4) 필자는 18세기 낙론의 예학을 연구하면 박성원의 『예의유집』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는데, 본고에서는 박성원의 예학사상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다.(김윤정, 앞의 논문)

『예의유집』은 이제의 조연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는데, 變禮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조선의 예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쉽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조되었다. 이에 類書의 형식을 통해 방대한 예설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박성원은 18세기 노론-낙론계 인물로서 현실적인 정치와 학문에 충실하였다. 그의 예학 역시 18세기 일상의 예 실천과 관련된 변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예의유집』을 통해 변례에 대처하는 여러 예설들을 집대성하였고, 직접적인 行禮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서의 등장은 18세기 조선 사회의 흐름에서 예학이 결코 괴리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2. 謙齋 朴聖源의 禮學

### 1) 생애와 활동

박성원은 밀양박씨로 字는 士洙이고, 駱村 朴忠元(1507~1581)의 6대손이다. 증조는 朴承任, 조부는 朴玄靑, 부는 學生 朴震錫으로 별다른 관직을 역임하지 못했다. 그런 만큼 박성원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박성원”이라든가 “세력이 없는 인물[無勢之人]”로 평가받았다.<sup>5)</sup> 박성원은 1767년 자신의 6대조인 박충원의 謚狀을 지어 선조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하였는데,<sup>6)</sup> ‘무세지인’인 박성원과 그의 가문에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박성원은 1726년경부터 李縉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sup>7)</sup> 서인-노론의 중심인물

5) 『英祖實錄』 권50, 영조 15년 10월 丙申 ; 『英祖實錄』 권60, 영조 20년 9월 辛巳.

6) 『密陽朴氏新羅事實』 文景公謚狀(駱村事實). 박충원은 1531년(중종 26)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이 이조판서와 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특히 영월부사로 부임했을 때 꿈 속에서 단종을 만나 그 무덤을 수습한 인물로서 유명하였다. 문경의 시호를 받고, 추후 魯恩書院에 봉향되었다.

7) 박성원은 『陶庵先生家狀』에서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것이 20년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 (“然聖源出入門下 覲德承壽者 殆至二十年 以其得於外者”)

로 성장하였다. 그는 스승인 이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1721년(경종1) 생원시에 합격했고 1728년(영조4) 별시문과의 을과에 급제한 후 언관으로서 사간원과 사헌부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또한 서인-노론의 입장에서 영조의 蕩平論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1744년(영조20) 司憲府 持平으로서 11조목의 啓辭를 올렸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남해에 圍籬安置되었다.<sup>8)</sup> 그 계사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영조가 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史官의 임명이 대신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셋째, 林錫憲, 趙明謙 등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매우 분노하였고, 박성원을 불러들여 일일이 꾸짖었다. 박성원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반박한 것은 임금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겼고, 여러 관리들을 비판한 것은 “반드시 搢紳들을 모두 쫓아내려고 하는 계책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사관제도의 경우 영조가 탕평의 일환으로 史官과 三司의 임명방식을 薦擧가 아닌 圈點으로 바꾸었던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은 탕평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졌다.<sup>9)</sup> 영조는 “憲臣의 가슴속에 가득찬 黨心”을 지적하였다. 이 후 영조는 박성원을 지지하는 鄭彥儒, 朴致隆 등을 “당파의 습성”으로 비난하면서 귀양보내는 등 엄하게 대처하였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였다.<sup>10)</sup> 영조는 봉당에 관련된 언행을 매우 미워하면서 탕평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박성원은 2년 동안 남해에 머물면서 스승인 이재와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했다. 이재는 유배지에서 박성원의 衣食을 걱정하면서도 독서에 힘쓸 것을 권했다.<sup>11)</sup> 박성원은 1746년 1월 위리안치에서 풀려났고,<sup>12)</sup> 그 해 10월 이재의 사망 이후에는 ‘泉門’<sup>13)</sup>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노론 의리에 철저하여, 1748

8) 『英祖實錄』권60, 영조 20년 8월 癸酉.

9) 박광용, 1994 『朝鮮後期 蕩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3-135면.

10) 『英祖實錄』권60, 영조 20년 9월 辛巳.

11) 『陶庵集』권18, (韓國文集叢刊 194), 書 『與朴士洙』“前後累書俱達否 行後一不聞聲息 不知何日抵譚 而其處風土飲食凡百之節如何…松江相國圍籬白木書大學故事 君素知者 讀書之外 更以何事相勉耶”

12) 『英祖實錄』권63, 영조 22년 1월 癸酉.

년 ‘黨心’으로 지목된 持平 李基敬을 지지하다가 대간으로 천거되는 臺通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sup>14)</sup> 1749년 12월 檢擬를 허락하는 명령이 내려와 관직에 추천되었으나,<sup>15)</sup> 1950년 어머니와 형, 형수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벼를 마친 후, 1754년에 사헌부 掌令으로 발탁되었고 1759년에는 사헌부 執義가 되어 영조에게 言路를 열 것을 간쟁하였다.<sup>16)</sup>

1759년 8월 박성원은 講書院의 左翼善으로서 당시 세손이었던 正祖를 가르쳤고, 1761년에는 정3품 諭善으로 임명되었다.<sup>17)</sup> 그는 어린 정조에게 『小學』을 가르치면서 『소학』을 읽는 것은 몸소 실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고<sup>18)</sup> 몸을 주재하는 心과 그 심을 주재하는 敬을 중시하였다.<sup>19)</sup> 영조로부터 세손의 학문은 박성원의 힘이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였다.<sup>20)</sup> 이후 참판을 마지막으로 1676년 봉조화가 되었는데, 이 때 영조에게 手書 御製謝箋을 하사받았다.<sup>21)</sup> 정조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학문을 가르쳤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한 위태로운 시기를 함께 했던 박성원에게 든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원 사후 시호를 내렸을 뿐 아니라 자손들을 蔭職으로 등용하도록 하였다.<sup>22)</sup> 정조는 박성원을 ‘한 시대의 인물 중에서 엄선한 사람’으로 평가하였고<sup>23)</sup> 그의 저작인 『敦孝錄』<sup>24)</sup>과

13) 이재는 寒泉精舍에서 講學에 힘쓰며 낙론의 학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의 제자들은 이재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스스로 ‘泉門’임을 의식하였다.(崔誠桓, 2001 『朝鮮後期 李緯의 學問과 寒泉精舍의 門人教育』, 『역사교육』 77, 94-95면.)

14) 『英祖實錄』권68, 영조 24년 11월 己卯.

15) 『英祖實錄』권70, 영조 25년 12월 癸卯.

16) 『英祖實錄』권81, 영조 30년 6월 丁巳 ; 『英祖實錄』권93, 영조 35년 3월 癸未.

17) 『英祖實錄』권97, 영조 37년 1월 甲辰.

18) 『講書院日錄』(己卯八月)二十九日 “讀小學者 欲行於身也 不然則 書自書 我自我 與不讀 無異 小學之言 無非即日可行者”

19) 『雷淵集』권28, (韓國文集叢刊 217), 講義 『尊賢閣進對』, “聖源曰聖學之要 莫如敬 盖心爲一身之主宰 而敬又一心之主宰也 非敬則無以檢攝身心 願於敬字上加意也”

20) 『英祖實錄』권99, 영조 38년 4월 戊子.

21) 『景賢堂宣麻錄』 奉朝賀朴聖源賜手書御製.

22) 『正祖實錄』권15, 정조 7년 2월 辛巳 ; 『正祖實錄』권21 정조 10년 6월 辛丑.

23) 『弘齋全書』권173, (韓國文集叢刊 267), 日得錄13 『人物(三)』, “教賤臣曰 予在春邱 賓僚之在左右者 多知名士 若爾父文清及故相徐志修, 諭善朴聖源 皆所謂極一代之選者也”

24) 『敦孝錄』은 박성원이 孝經과 西銘을 비롯하여 經史와 여러 문헌에서 孝에 관한 각종 교

『예의유집』 등을 왕명으로 간행토록 하였다.

박성원은 당시 이재의 문하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인식되었고,<sup>25)</sup> 이재 사후 ‘천문’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먼저 박성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원진의 『寒泉詩』 비판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1746년 이재는 제자인 崔祐이 한원진을 찾아간 사건을 계기로 한원진 학설의 오류를 지적하는 『한천시』를 지었다. 이듬해인 1747년 한원진은 『題寒泉詩後』를 지어 이재의 논리가 人獸·儒釋·華夷의 분별을 흐리게 한다면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재는 이미 사망한 후였으므로 제자들이 이 논쟁에 참여하였는데, 박성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최석이 한원진을 찾아가 논쟁을 거론한 것이 스승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평하였고, 『韓南塘詩跋辨說』을 지어 한원진이 이재의 『한천시』를 비판한 것을 재비판하였다. 또한 『心性說十二條』를 통해 호론의 심성론을 꼼꼼하게 비판하였다.<sup>26)</sup> 그는 스승의 심성론을 계승하면서 낙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또한 이재의 문집 편찬을 주도하였다. 白水 楊應秀(1700~1767)는 박성원에게 편지를 보내어 “형이 이미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해내지 못한다면 형이 사망한 후에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빨리 문집을 편찬하도록 독려하였다.<sup>27)</sup> 박성원은 1763년에 이재의 年譜를 草하고 家狀을 지었는데, 가장에서 곧 문집 몇 권이 간행될 것이라고 한만큼 문집 간행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sup>28)</sup> 그런데 淡窩 洪啓禧(1703~1771)가 이재의 문집에서

훈과 고사를 추려내어 분류 편집한 책이다. 박성원은 효를 모든 선과 도덕의 기본으로 중시하면서 참고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엮었다. 『예의유집』과 같이 類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5) 『梅山集』권52, (韓國文集叢刊 296), 「雜錄」, “靜坐窩沈公潮以江門晚進 卒業於南塘 常篤信南塘 有言南塘門人無如泉門之朴聖源, 楊應秀者 沈公曰宋能相, 金謹行諸人 何渠不若乎”

26) 『不易言』권1, 尊聞錄 「韓南塘詩跋辨說」, 「謙齋辨說(心性說十二條)」, 그 내용은 권오영,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들레개, 2003, 49-55면에 자세하다.

27) 『白水先生文集』권1, (경인문화사 영인본), 書 「答朴謙齋」, “遺集之役 兄旣在待死之中 而未及可當於此時 則兄死之後 誰當任其役者 若不至於耳無聞目無見之域 則須勿停輟期於收殺 如何如何”

28) 『陶庵先生家狀』, “然此在先生 特其餘事耳 有文集幾卷 將刊行于世”

자신을 죄주었던 書牘을 빼려고 초고를 가져가 버림으로써 박성원과 갈등을 빚었다.<sup>29)</sup> 이렇게 문집 편찬이 지연되는 가운데, 영조 말 박성원이 사망으로써 그가 주도하던 문집의 간행은 중단되었다. 이후 이재의 학통이 김원행으로 연결되면서 박성원은 낙론 학통에서 배제되어갔다.<sup>30)</sup>

## 2) 예학사상

이재 사후 박성원은 스승의 예설을 중심으로 '천문'의 예학을 주도하였다. 1746년 10월 28일 이재는 寒泉精舍에서 花田으로 가던 중 險川(현 경기도 용인)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근처의 집으로 옮겨 屬纊과 復을 하는 등 『四禮便覽』에 따라 治喪이 진행되었지만, 이재가 正寢에서 사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成服과 관련하여 文菴 李宜哲(1703~1778)과 鹿門 任聖周(1711~1788)는 『禮記』 『曾子問』에 의거하여 일단 한천으로 돌아가 成殯한 후에 성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박성원과 大齋 兪彥鏞(1714~1783)<sup>31)</sup>은 『禮記』와 달리 '出疆'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성빈 여부에 상관없이 4일째 성복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들의 뜻대로 결정되었다.<sup>32)</sup>

29) 『日省錄』 정조 즉위년 5월辛丑.

30) 박성원이 낙론 道統에서 배제되는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 그는 명망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그가 계속 관직생활을 했다는 것이 山林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이다. 도통의 결정이 후세의 자손들과 제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31) 기계유씨로 자는 士鎬·士精이다. 『家禮源流』를 지은 市南 兪槩(1607~1664)의 후손으로서 예를 좋아하는 家學의 전통을 이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한성부우윤 直基이며 어머니는 좌참찬 金有慶의 딸이다. 정조대 '淸論' 관리였던 兪彥鏞의 큰형이었다. 유일로 천거되어 世子侍講院諮議가 되고 1778년(정조2)에 경연관이 되었으며 1783년에 敦寧府都正이 되어 원자를 보도하였고 그 뒤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유언집은 박성원보다 17살 연하로서, 박성원과 예론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했고 『예의유집』의 편찬도 함께 하였다. 후에 고금의 상례에 관한 예제를 인용하여 五服의 상복을 해설한 『五服名義』을 지었는데, 목차의 구조가 동일한 만큼 『예의유집』의 분류를 마친 후 상복제에 대하여 보충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32) 『鹿門集』권20, (韓國文集叢刊 228), 雜著 『險川禮說』 “二十八日門人李行祥抱先生入轎…門人盧以亨負先生移入他舍 遂屬纊 復日陶庵李先生復 治喪一遵先生所著四禮便覽…初門人李宜哲與諸生議曰 禮君出疆薨則子麻弁經疏衰菲杖 入自闕升自西階 君大夫士一節也 詳

이렇게 이재가 정침에서 사망하지 못한 상황은 '천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재와 자손들이 “병환을 받들지 않았고 천명을 알지 못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었다. 심지어 '천문' 안에서도 崔祐과 李仁錫 등이 이재의 죽음은 자손들이 추운 날씨에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힐난하면서 祭文에 그들의 허물을 기록하려 했다. 박성원은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스승이나 그 자손의 허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더 나아가 최석 등의 心術이 바르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더 이상 동문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sup>34)</sup>

박성원은 이재 집안의 變禮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재의 부인 남양홍씨(1683~1758, 兪正 洪禹賢의 딸)는 아들 李濟遠(1709~1752)과 嫡孫 李木(1725~1755)이 먼저 죽은 후에 사망했다. 이에 이목의 동생인 李禾(1728~1775)가 次孫으로서 承重하여 삼년상을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박성원은 유언집, 양응수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次孫承重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재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변례라는 점이 중시되었다. 양응수는 “스승 집안의 일[師門家事]은 뜻을 다하여 辨難하여 그 시비를 정하지 않으면 後人의 의심이 반드시 사문에 미칠 것이므로 이에 더욱 방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sup>35)</sup>

먼저 양응수가 유언집에게 편지를 보내, “嫡孫이 후사 없이 죽은 상황에서 次孫이 조모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양응수는 “兄亡弟及(殷及)은 古禮이고, 김장생의 집안에서 행한 예”<sup>36)</sup>이며 김집과 권상하가

見曾子問 鄭玄註曰棺柩未安 不忍成服於外也 今當用此禮 入棺後卽返柩 到泉上乃成服 朴聖源兪彥鏞等執出疆二字 謂此非出疆 不可爲據 相持未決…而主人先入於兪朴之說 且以事勢爲拘 竟不從 竊詳禮意”

33) 『不易言』권3, 『東里問答』, “余應之曰 所謂外議云 何曰畢命松楸自是先生本義 且當寒發程非愼疾非知命也 則彼輩之歸咎喪人 烏可已乎 若無此等議論 爲先生累 亦大矣…自孔孟程朱以至我東諸賢 皆曰某年某月某日吾當死云 而我先生獨不知之 則在先生有或爲歎 然而古之聖賢無預知之事”

34) 『不易言』권3, 『東里問答』, “崔祐李仁錫認以爲喪人有罪 故引月川古事 期望於我輩…其受業於先師 則曰道學也 曰義理也 而其心術之不正 至於如此 此不足以同門待之”

35) 『不易言』권3, 禮疑往復 “楊白水與兪大齋書”, “況此乃師門家事 而若不極意辨難 以定其是非 則後人之疑 必將及於師門 此尤爲不可放過者”

36) 김장생의 아들 김집은 李珥의 서녀인 첩 이씨 소생에게 자신의 제사를 맡기면서 조상의



“장손이 죽었을 때 차손이 승중하는데 의심이 없다”고 한 것을 형망제급의 근거로 제시하였다.<sup>37)</sup> 또한 유언집이 『疑禮問解』에서 김장생이 인용한 『儀禮經傳通解』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다.<sup>38)</sup> 『儀禮經傳通解』에서 宋敏求(1019~1079)는 『通典』의 적손이 상중에 죽었을 때 차손은 攝主로서 기년복을 입는다는 徐邈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司馬操의 논쟁을 인용하면서 사마조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다.<sup>39)</sup> 양응수는 이 예설을 근거로 차손이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설 고증뿐만 아니라, 이재의 부인이 손자가 3명이나 있는데도 주인 없는 혼백이 되는 것은 인정상 편하지 않고 의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40)</sup>

이에 대해 유언집은 박성원의 편지를 인용하여 양응수에게 답하였다. 이재가 ‘적통을 엄히 한다[嚴嫡統]’는 점에서 『의례문해』의 설을 알면서도 차손의 승중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예설이 沈潮(1694~1756, 字 信夫)에게 답한 편지에 확실히 드러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선생 집안의 상례에 다른 설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41)</sup> 양응수는 유언집이 근거로 삼은 박성원의 편지를 조목조목 비판하여 유언집에게 보내고 박성원에게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먼저 차자승중의 예학적 근거로 『통전』, 『의례경전통해속』 등에 나오는 范宣說과 服制論, 그리고 庾蔚之說을 제시하였다.<sup>42)</sup> 그리고 심조에게 답한 편지가 이재의 예설이라

제사에 대한 권한은 『경국대전』 봉사조에 따라 동생에게 넘겨주었다.(韓基範, 1999 『17世紀 庶孽의 宗法的 地位-『禮問答書』의 分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81, 138-139면 참조.)

37) 『不易言』권3, 禮疑往復 「楊白水與俞大齋書」 “蓋殷及固有古禮 故沙溪先生實爲我東禮學之宗 而其子孫乃行此禮 近聞朴友季堂之言則 慎齋答人長孫婦疑當奉祀之問 曰次孫承重無疑 遂庵答人書亦曰 長孫死則次孫承重無疑 長孫婦主喪之說 其可笑也”

38) 『不易言』권3, 禮疑往復 「楊白水與俞大齋書」 “通解說若果誤則 以沙溪之該博精詳 何以引用於問解也 不信問解又不信通解 而就考通典 誠是意外事也”

39) 『沙溪全書』권37, 『疑禮問解』 喪禮 (附)并有喪 祖喪父死代服.

40) 『不易言』권3, 禮疑往復 「楊白水與俞大齋書」 “今日師門夫人 生而有三孫 死而爲無主之鬼 是豈人情之所安 而義理之當然乎”

41) 『不易言』권3, 禮疑往復 「俞大齋答楊白水書」 “但先師平日定論 未嘗不以嚴嫡統爲主 而凡於次孫之持重三年 雖知有問解說 而終不許之 其答沈信夫書問 可按而知也 先師定論既如此 則 今於先師家喪禮 誰敢有異議”

도 의심스럽다면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준길과 송시열이 김장생을 존신하면서도 근거가 없는 경우는 따르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이재의 답변은 “한 때 의심한 것으로 고례를 널리 채록하여 시비를 정한 바가 아니므로,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스승의 의심스런 말만 지켜서 정론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보았다.<sup>43)</sup> 양응수는 스승의 견해일지라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서를 두루 살펴 합당한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응수는 박성원이 강조하는 ‘嚴嫡統’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적통을 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王母의 상에 주인이 없게 되는 일과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보았다. 조부의 상을 당했을 때 廢疾이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無主’가 그만큼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계 박세채의 설을 인용하여 “일단 차손이 삼년상을 치루고 나중에 적손에게 입후하여 사당에 고하고 개정한다면 탈종의 혐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차손승증을 금하는 예가 세상에 통행되고 행하는 자들이 이재를 구실로 삼게 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여겼다.<sup>44)</sup> 양응수는 嫡統을 엄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주인 없는 상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의리에 어긋나는 일임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후 박성원은 양응수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박성원은 次子承重 논의에서 ‘입후’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양응수가 근거로 제시한 범선설과 복제령은 “적손

42) 『不易言』권3, 禮疑往復「楊白水與俞大齋書」“兄之今書 一如朴兄之見 故謹就朴兄所批評弟書及其答人書 敢陳愚見願加細察 而又以轉示朴兄也…愚近者得見 朴友季堂所錄示儀禮通解續說 則范宣答蔣萬語 及服制令二條 俱爲次孫當承重之證 案南溪說 人有庾蔚之云云 則其主三年之說 不止爲一倍 朴兄難以一邊之說 斷定其服三年之語 於是乎窮矣”

43) 『不易言』권3, 禮疑往復「楊白水與俞大齋書」“先師答沈某云云 特出於一時持疑而 未及博探古禮 以定其是非者也…若不得明據則 只當依同春不從沙溪父卒祖在爲母服葬之訓 及尤庵不從爲所生父母自稱喪人之訓也 而二兄旣不能攷出明據 而只守先師持疑未決之辭以爲正論 而又謂不可更容他議 此恐不可謂知先師之心者也”

44) 『不易言』권3, 禮疑往復「楊白水與俞大齋書」“大抵嫡統 固不可不嚴 而王母之喪 尤不可使無主者也 以此較彼 豈無輕重之別乎…今祖喪無主之不義 尤有大於代父之嫌 故父有廢疾 不堪服喪者 朱子斷定以嫡孫代爲之執喪…況次孫持重服以主三年之喪 而待異日立嫡孫 後告祠改正 如南溪之說 則又無奪宗之嫌乎 噫 英陽家事已矣 不可追而繼 自今此禮將爲舉世之通行 而行之者必以我先師爲口實 其爲不幸可勝言哉”

이 무후일 때 차손이 승중하는 것의 증거는 되지만, 적손이 장차 입후하려 하는데도 차손이 승중하는 증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古禮에는 大宗과 大夫 외에는 立後의 법이 없으므로 적손을 위한 입후를 생각할 것 없이 차손이 승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는 입후를 전제했기 때문에 “차손은 攝主일 뿐이므로 신주에 봉사자의 이름을 쓰는 旁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재가 ‘嚴嫡統’을 중시한 만큼, 박성원도 “선생 집안 상례에 도리어 평소 허락하지 않으신 예를 쓰는 것은 미안”하다는 점에서 차손승중을 인정하지 않았다.<sup>45)</sup> 박성원은 이재의 예설에 누구보다 충실한 입장을 보였다. 차손인 이화가 삼년상을 입는 것은 ‘嚴嫡統’에 어긋나고, 스승인 이재의 예설과 다르므로 스승의 명예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재 집안의 차손 승중을 둘러싼 논쟁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었다. 차손인 이화의 삼년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박성원의 주장대로 삼년복을 입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적손인 이목의 부인 안동김씨(?~1781, 承旨 金文行의 딸)가 생존해 있었고, 이후 차손 이화의 아들인 李光憲(1764~1828)을 이목에게 입후하여 적통을 이었다.<sup>46)</sup> 이재처럼 도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물의 경우, 그 집안의 행례가 문하의 여러 학자들에게 중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잘못된 행례는 그 개인과 가문, 나아가 등문에까지 불명예가 될 수 있었다. 박성원은 ‘嚴嫡統’과 ‘스승의 예설을 따른다’는 원칙을 갖고 변례를 해결하여 ‘천문’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박성원은 ‘嚴嫡統’의 입장에서 宗子만이 吉祭를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원행과 논쟁하였다. 박성원은 상을 모두 마치고 지내는 길제는 새 신주를 사당에 봉안하면서 합하여 제사지내는 祫祀와 5대조 신주를 옮겨 내는 遞遷의 두 절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支子は 길제를 지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김원행

45) 『不易言』 권3, 禮疑往復 『朴謙齋與楊白水書』 “然則此二條 固可爲嫡孫無子 次孫當承重之證 而不必爲嫡孫將立後者 次孫當承重之證也 禮經古義 大宗及貴爲大夫者外 無立後之法 則所謂次孫當承重者 未必有他日嫡孫立後 後還宗之意於其間者 又可知矣 先師之不許 次孫持重三年者 以其將有他日嫡孫立後故也…次孫雖不得不攝主 而於其題主亦不許旁註 則況可許以持重三年乎 其致嚴於嫡統者如此 而今於先生家喪禮 及用平日不許之禮 其果無未安乎”

46) 『牛峰李氏世譜』 권3, (牛峯李氏大宗會) 「二十世」 光憲.

은 길제는 喪을 마치고 凶에서 吉로 나아가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支子は 사당에서 협사와 제천을 거행하지 않을 뿐이지 길제는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박성원은 ‘엄적통’을 원칙으로 적자와 지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예설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재 예설에 대한 존승은 자신의 집안 變禮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1750년 박성원은 어머니, 형, 형수의 상을 연달아 당하는 번고를 맞게 되었다. 더군다나 형은 후사 없이 사망했으므로 제반 절차가 박성원의 몫이 되었다. 박성원은 먼저 자신의 둘째 아들인 종식을 형의 계후자로 삼아 종통을 잇게 하였다. 이에 박종식은 3喪을 맡게 되었는데, 이처럼 상이 겹치는 경우[竝有喪],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었다.

1752년 박성원은 後喪의 大祥이 지난 후인 경우, 前喪의 禫祭를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이미 『상례비요』에서 김장생은 “전상의 담제를 후상의 상중에 지낼 수 없는 것은 역시 차마 凶事 때에 吉禮를 거행하지 못하는 뜻”임을 밝혔고 그렇게 시기가 지나면 전상의 담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보았다.<sup>48)</sup> 그러나 박성원은 후상의 대상이 지난 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 先妣의 담제가 이번 5월에 있는데, 先兄의 大祥이 지난 1월이었고, 형수의 대상 또한 5월 초하루입니다. 제 아들 宗植이 선형에게 출후하여 承重으로 3분의 상복을 입었는데, 5월 1일 이후 3상이 모두 대상 후, 담제 전이 되니 전상의 담제를 행하는 일절은 참고할 명문이 없습니다. (중략)

(답) 竝有喪이라는 것은 후상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상의 담제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담제가 길제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祥祭(大祥)를 지냈어도 27개월을 지나기 전이라면 여전히 상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무릇 길한 제사는 모두 행할 수 없는데, 어찌 담제만 의심하겠습니까?<sup>49)</sup>

47) 『溪湖集』권4, 書 「答朴士洙」 “所諭支子無吉祭 開曉至悉 幸甚…愚故以爲吉祭者 不過終喪之別祭而已矣 然喪旣終矣 則祖廟之祫祀 於是乎可以舉矣 昭穆之遞遷 於是乎可以行矣 凡所以去凶而卽吉者 無不由之 而其最大者 特在於祫祀遞遷二者 故後來論吉祭者 恒以是爲說 然其實因終喪而有此祭 因此祭而舉此二者耳 非此祭專爲是二者而設也”

48) 『沙溪全書』권34, 「喪禮備要」 禫 “(按)前後有喪則 前喪禫祭不可行於後喪中 亦不忍於凶時行吉禮意也 又不可追行於後喪畢後 蓋過時不祭也 朱子之意若鄭註開元禮皆然”

박성원의 질문에 대해 임성주는 후상을 마치기 전에는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없다고 보았다. 담제는 길한 제사에 해당되므로 상중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상이 지났어도 담제를 마치는 27개월까지는 여전히 상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貞庵 閔遇洙(1694~1756), 櫟泉 宋明欽(1705~1768), 屏溪 尹鳳九(1681~1767)도 모두 후상을 마치기 전에는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50)</sup>

박성원은 이와 관련하여 김원행과 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예설 논쟁을 진행하였다.

(문) 禫祭는 비록 길한 제사나 哭泣하고 상복을 갈아입는[變除] 절차가 있는데 『喪禮備要』대로 吉服을 입고 치른다면 비록 잠시의 借吉이라도 진실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先師(李緯)가 이미 『四禮便覽』에서 禫服을 禫祭條로 옮기고 吉服을 吉祭條에 옮겨두어 변제에 스스로 차서가 있게 하였으니, 『상례비요』는 오히려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중략)

(답) 禫祭에는 비록 哭泣과 變除의 절차가 있으나 그 자체는 길한 제사입니다 때문에 고인이 또한 禫은 澹澹하여 平安하다는 뜻이라 하였으니 지금 重喪을 마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다면 효자의 정이 과연 이러하겠습니까. 또 『家禮』의 글에 “상제에는 黻服을 입고 담제에는 吉服을 입는다” 하였으니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중략) 『喪禮備要』에서 담제에 길복을 쓰는 것은 주자의 뜻을 따른 것으로 古禮에 위배되지 않으니 그 闕略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찌 이를 버리고 반드시 예가 아닌 예에서 구하겠습니까<sup>51)</sup>

박성원은 담제에 곡읍과 변제의 절차가 있고 길복이 아닌 담복을 입는다는 점에서 길제와 차이를 두었다. 이재가 『사례편람』에서 祥祭에 祥服, 禫祭에 禫服, 吉祭에 吉服을 입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재는 松江 鄭澈(1536~1593)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禮部 郎中 胡僖가 “담제에 담복을 진열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大祥에 ‘陳祥服’ 조문을 새로

49) 『鹿門集』권4, 書 「答朴士洙(聖源○壬申)」

50) 『貞菴集』권6, (韓國文集叢刊 215), 書 「答朴士洙(聖源○壬申)」; 『櫟泉集』권8, (韓國文集叢刊 221), 書 「答朴士洙(聖源)」; 『屏溪集』권16, (韓國文集叢刊 203), 書 「答朴士洙(聖源○壬申)」

51) 『溪湖集』권4, (韓國文集叢刊 220), 書 「答朴士洙(論父喪祥後行祖母喪之禫)」

만들고 대상에 있던 ‘陳禫服’ 조문을 禫條로 옮겼다.<sup>52)</sup> 또한 『상례비요』에서 김장생이 담조에 보충해 넣은 ‘設次陳吉服’ 조문을 吉祭條로 옮겨 변제 절차를 완성하였다. 박성원은 이제의 예설을 근거로, 담제는 길복을 입지 않는 절차로서 길한 제사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후상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상의 담제를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원행은 담제에 곡읍과 변제의 절차가 있다고 해도 담제는 길한 제사이고 길복을 입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담은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상이 끝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으므로 담제를 지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상례비요』는 주자의 설에 따라 담제에 길복을 입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궤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례편람』의 규정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차례의 예문답에서 박성원은 “騫은 아직 純吉하지 않은 복장이고 禫 역시 아직 純吉하지 않은 제사이므로, 아직 순길하지 않은 복장으로 아직 순길하지 않은 제사를 행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원행은 “禫祭는 아직 순길하지는 않지만, 그 뜻을 말하면 澹澹하여 平安한 것이고 그 일로 말하자면 이로 말미암아 부인을 거느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음주, 육식할 수 있으니 吉한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례』에는 길제가 없기 때문에 담일에 순길을 사용했고, 『비요』는 비록 지극히 화려한 것을 미안하게 여겨 玄冠, 黑帶 등을 사용했으니 모두 吉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례비요』가 『가례』를 따르고 있다고 보았다. 『사례편람』은 명나라 제도를 사용하여 불가하지는 않지만, 『상례비요』는 時王之禮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周公과 朱子の 뜻에 맞다는 점에서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김원행은 담제는 길한 제사라는 입장에서 27개월의 상을 다 마치기 전에는 비록 25개월의 대상이 지났더라도 담제를 지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53)</sup>

52) 『四禮便覽』권6, (韓國禮學叢書 40), 喪禮(四) 「大祥」, “陳祥服(皇朝制)…(按)家禮此條云陳禫服而不無古今之異且在萬曆年間鄭松江赴京問於禮部則郎中胡僖答曰禫而陳禫服序也今當薦此祥事之日而先陳禫服人無不微疑其間…故但以陳祥服三字爲大文註以皇朝制以丘儀與國制關錄于下而禫服一段移置禫條”

53) 『溪湖集』권4, 書 「答朴士洙」, “夫騫爲未純吉之服而禫亦未純吉之祭則以未純吉之服行未

그러나 박성원은 『상례비요』와 어긋난다는 부담을 안은 채, 이재의 설에 근거하여 前喪의 담제를 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성원은 동문이자 사돈인 三遇堂 韓敬養(字 士涵)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설을 확정하였다. 양응수는 이재의 예설임이 확실하다면 『사례편람』에 침입하는 것이 좋으나, 그 전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나마도 이재의 병환 후의 편지라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sup>54)</sup> 박성원은 『예의유집』에서 병유상의 담제 문제를 전상의 담제를 거행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sup>55)</sup> 자기 집안의 행례가 이재의 예설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박성원은 스승인 이재의 예설을 존신하면서, 예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례편람』이 『상례비요』를 보충하고 수정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라 예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례비요』와 다른 예설들은 늘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이재의 문하에서도 『사례편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박성원은 『사례편람』의 예설을 고증하여 스승의 예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입장이 『예의유집』의 편찬 과정에도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었다.

純吉之祭 固亦似乎稱矣 然禫雖不麗乎純吉 而語其義則澹澹而平安也 語其事則由是而可以從御 可以縣樂 由是而可以飲酒而食肉矣 其爲吉也 不已多乎…但家禮無吉祭 故禫日使用純吉 備要則雖未便極其華盛 而猶用玄冠黑帶之屬 則大抵皆可謂之吉也…今便覽之用皇朝舊制 宜亦無不可者 然備要之爲時王之禮 盖亦爲久 而又有得於周公朱子之意 則雖無改 自未爲失 尤翁所謂儒家儀範 必不得徵於朱子然後 乃從他說者 亦豈不爲後學之明法耶 且喪中不禫 古多明據 祥後行禫 禮無概見 雖以便覽之文 此事亦無的證 今必行之則未知於聖人闕疑之義 何如也”

54) 『白水先生文集』 권9, 雜著 『四禮便覽辨疑』, “按備要說如此而 似聞朴士洙之曾遭重喪也 與韓士涵往復以行前喪之禫 云旣載沙溪說於便覽 而不從何也…禫條行前喪禫事於後喪禫前果有先生明訓則 以此作按說入於補註下 依朴兄說似好矣 第未知先師答人書在何年月 而其書辭亦復如何 先師疾病以後書則 頗有門人之代書 故有如答韓師朝問 無五虞之文者 此則不可不審慎也 如何”

55) 『禮疑類輯』 권17, (韓國禮學叢書 45-48), 喪變禮 『并有重喪中前喪禫祭行廢』, “…陶庵曰 前禫旣非過期則安敢闕之 禫事亦當從祥之前後次第行之 至於同日則不可矣 又曰 前喪禫當行於後喪大祥後 雖同月內此則無嫌矣 (答李命元○以上禫祭當行)”

### 3. 『禮疑類輯』의 편찬과 성격

#### 1) 편찬과 간행

박성원은 1758년 스스로 序를 써서 『예의유집』을 편찬하게 된 과정과 목적을 서술하였다. 그는 潛溪 李惟哲(1663~1740)<sup>56)</sup>의 『四禮集說』을 기초로 이재의 조언을 구해 『예의유집』을 편찬하였다.<sup>57)</sup> 이유철은 예학에 전념하여 古禮를 정리한 『사례집설』과 김장생의 『疑禮問解』, 송시열의 『經禮義疑』, 박세채의 『南溪禮說』을 合錄한 예서를 저술하였는데, 두 책을 모두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유철의 아들인 李希正이 아버지의 遺命에 따라 박성원에게 이를 마무리해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이다.

박성원은 이재에게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이재는 “『사례집설』은 주자의 『가례』에 羽翼되나, 우리나라 학자의 예론이 응변에 가장 잘 맞고 또 쉽게 해석됨만 못하다”고 평하였다. 이재는 『가례』를 보완하는 형식의 『사례집설』보다 조선학자들의 예론을 담고 있는 책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성원은 이재의 견해를 받아들여 조선학자들의 예설을 중심으로 『예의유집』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에 『예의유집』은 이재의 예학을 계승하여 『사례편람』을 보완하는 성과로 인식되고 있었다.<sup>58)</sup>

박성원은 이유철의 책에서 번잡한 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여러 문집에서 예설을 발취하여 보충하였다. 유언집과 함께 10여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 향

56) 이유철의 字는 思仲으로 세종의 아들 桂陽君 贈의 후손이다. 宋時烈의 문인으로 己巳換局 때 仁顯王后 폐출의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楊州의 潛谷에서 독서로 여생을 보냈다. (『老洲集』 권16, 墓誌銘 「處士潛溪李公墓誌銘」)

57) 『禮疑類輯』 「禮疑類輯序」, “潛溪李公惟哲氏 承家學淵源 而尤致意於禮 既編前古禮論爲四禮集說 又取我東沙溪問解 尤庵禮疑 南溪禮說 而合錄之別爲一部 其意蓋不止此 將以博採衆說次第收入 而二書俱未了 公遽卽世矣 其胤希正甫以公遺命 屬聖源訖工 聖源惟不克承當是”

58) 『有心齋集』 권5, (韓國文集叢刊 續82), 祭文 「祭謙齋朴公(聖源)文」, “敦孝之錄 源於檢身編禮之成 備於便覽 而若彼理氣之說 起於起處”



목을 나누고 제목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원서 24편 부록 2편, 총 26권 15책에 달하는 거질의 『예의유집』이 편찬되었던 것이다.<sup>59)</sup>

박성원은 『예의유집』을 편찬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집안의 日用의 예는 冠婚喪祭가 가장 중요하다. 常變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曾子問」 한 편에서 자세히 분석하였고 고대와 현대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朱先生이 『家禮』에 고금을 참작하였던 것에서 남김없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천하의 事變은 더욱 끝이 없어 옛 사람의 의논이 혹 미치지 못한 바는 또한 후세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선에서 賢儒가 계속 나와 예학이 크게 밝아졌으니, 의심나면 질의해두었고, 질의가 있으면 변석해놓았으며, 또한 더러는 스스로 설을 지어 밝히기도 하였다. 비록 그 詳略同異는 같지 않지만 요컨대 모두 서로 참고하고 근거할 자산이 되니 대개 증거가 묻지 않은 바와 『家禮』에 신지 않은 바가 또한 많이 밝혀져 禮經에 보충됨이 크다. 다만 그 설이 각 한 책을 이루거나 혹은 제가 문집 중에 산출되니 窮鄉의 선비는 이미 다 모으지 못하고, 급한 때에는 또 두루 살펴보기 어렵다. 이로써 사람들이 고례에 없는 變禮를 만나면 비록 선배가 이미 논한 바가 있어도 늘 스스로 어둡고 혹 한 책에서 그 설을 얻어도 여러 책에 또 다른 설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끝내 참증하여 질충함이 없었다. 책은 비록 많아도 사용할 때 빠뜨리는 까닭이니, 학자가 항상 병으로 여겼다.<sup>60)</sup>

박성원은 조선의 예학이 『가례』에 빠진 부분을 밝혀내 ‘禮經’을 보충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의 예설을 모으고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조선의 예설은

59) 『禮疑類輯』 「禮疑類輯序」, “懼嘗以是稟于我陶菴先生 先生教以集說固爲家禮羽翼 然猶不如東賢禮論之取切於應變 又近而易可徵也 遂謹就其合編三書者 刪其繁複 定其次第 又博考諸集 攬摭要語 凡二十九家三十七書 逐條補入一如原例 而若其分條定目 實與同門友俞彥鏞士精共之 蓋費十數年精力 而書是脫藁 原書二十四編附錄二編 總名之曰禮疑類輯 於是乎上下數百載間 許多疑變之禮 同異之說 一開卷瞭然 庶幾人之有疑 莫證臨卒難考者 有以證之詳而考之便”

60) 『禮疑類輯』 「禮疑類輯序」, “有家日用之禮 莫重於冠婚喪祭 而常變不一則 曾子問一篇辨析詳矣 古今異宜 則朱先生家禮參酌盡矣 然天下之事變愈無窮 前人之議論或不到者 亦不能無待於後也 我東賢儒輩出 禮學大明 疑而有問 問而有解 又或有自爲著說 雖其詳略同異之不齊 而要皆爲參互援據之資 蓋曾子之所未問 家禮之所未載者 亦多所發明 其有補於禮經大矣 顧其爲說各成一書 而或散出於諸家文集中 窮鄉之士 既無以盡蓄 卒遽之際 又難乎遍考 是以人遇無於古之變禮者 雖有先輩所已論 而輒自矇然 或於一書得其說而 不知諸書又有他說 卒無以參證而折中焉 所以書雖多而用則闕 學者常病之”

상변과 고금의 차이에서 생기는 변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를 집대성하여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실용성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박성원은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여 다양한 예설을 수록하고자 하였다. 인용서는 모두 조선학자의 저술로서 총 29명의 37권에 이르는데, 18세기 중엽이라는 시기에 수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1)</sup> 물론 김장생, 송시열, 박세채의 예서를 중심으로 한 만큼 이들의 예설이 가장 많고 또한 스승인 이재의 예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러나 박성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신의 판단을 배제한 채 모든 예설을 수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2)</sup>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의 經書와 禮書를 제외하고 오로지 조선 학자들의 예설만을 모았다는 것이다. 박성원이 중국의 禮經을 직접 인용하지 않은 것은 조선 학자들의 해석과 고증을 통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선 예학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1783년(정조7) 교서관에 명하여 『예의유집』을 간행케 하고 스스로 서문을 지어주었다. 정조는 『예의유집』이 조선 선비들의 예학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사람이 그 性을 잘 살리고 情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쪽을 찾아가면 거기에 다른 것을 더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가 예에 맞는 것이다. (중략) 『遼史』에 의하면, 조선에는 箕子가 남긴 풍속으로 그들 정에 알맞은 제도를 만들어 은연중 尙質之風이 있다고 했는데, 情에 알맞은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거의 禮인 것이다. 조선조에 와서 열성이 대를 이어 일어나 유교를 진흥하여 이후 300년에 걸쳐 예를 안다는 이름 있는 선비들이 무려 4, 50명이나 배출되었다. 그들은 알기 어려운 古訓이나 여러 가지 뒤섞인 時變들에 대해 질문을 되풀이하고 전거를 끌어 밝혀내기도 하였는데, 다

61) 인용서는 다음과 같다. 『晦齋集』, 『河西集』, 『退溪集』, 『退陶言行錄』, 『頤庵集』, 『蘇齋集』, 『高峯集』, 『栗谷集』, 『擊蒙要訣』, 『牛溪集』, 『松江集』, 『龜峰集』, 『寒岡集』, 『西厓集』, 『沙溪集』, 『家禮輯覽』, 『喪禮備要』, 『疑禮問解』, 『朽淺集』, 『旅軒集』, 『愚伏集』, 『續疑禮問解』, 『浦渚集』, 『冶谷集』, 『澤堂集』, 『尤庵集』, 『華陽語錄』, 『同春集』, 『市南集』, 『南溪禮說』, 『三禮儀』, 『靜觀齋集』, 『遂庵集』, 『農庵集』, 『芝村集』, 『陶菴集』, 『四禮便覽』, (『禮疑類輯』 『禮疑類輯引用書目』)

62) 『禮疑類輯』 『禮疑類輯凡例』, “一 諸賢之說 固不無同異 得失之不一 而不敢以意去 取俱爲載錄”

만 그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갑자기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흠이었다. 故 諡 善 朴聖源이 그 여러 집에 있는 글들을 한데 모아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관혼상제를 각 목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宗法과 雜禮를 부록하여 『禮疑類輯』이라는 이름으로 몇 권의 책을 만들었다.<sup>63)</sup>

정조는 조선적인 특성에 맞는 조선의 예를 중시하였다. 조선의 質을 숭상하는 기풍을 전제로 하여 그 감정에 알맞은 제도가 바로 조선의 예라고 보았다. 또한 예로 이름난 선비가 4·50명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조선의 예학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적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었다. 정조는 『예의유집』이 “權姦들이 삭제하고 첨가하여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政和禮』 등의 예서들과 비교하여 더 낫다고 평가하였고,<sup>64)</sup> 제주도에서 妻妾 분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자 교화의 차원에서 『의례문해』와 『예의유집』을 보내도록 하였다.<sup>65)</sup>

## 2) 구성과 성격

박성원은 『예의유집』을 편찬하면서 10여년의 공력을 들여 조선의 축적된 예설들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만큼 구성의 치밀함과 방대함이 가장 돋보이는 예서라 할 수 있다. 『예의유집』의 구성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많은 항목들을 ‘大目-小目-次小目’으로 배열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sup>66)</sup>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을 大目, 상례에 해당되는 초종, 오복 등을 小目, 오복의 분종복, 부재위모 등의 내용을 次小目으로 지정하였다. 그 수를 살펴보면 대목은 冠禮(附笄禮), 冠變禮, 婚禮, 婚變禮, 喪禮, 喪變禮, 祭禮, 祭變禮, 그리고 부록에 宗法과 雜禮를 포함하여 총 10항목이다 소목은 관례에 11, 관변례 3, 제례

63) 『弘齋全書』권8, 序引 「禮疑類輯序」.

64) 『弘齋全書』권162, 日得錄2 「文學(二)」 “至政和五禮新儀二百四十九卷而極矣 朱紫陽以爲一時權姦 損益抵牾 更沒理會 近來徐乾學讀禮通考 與我國故諡善朴聖源禮疑類輯 差可人意”

65) 『正祖實錄』권20, 정조 9년 5월 庚申.

66) 『禮疑類輯』 「禮疑類輯凡例」, “一 每卷首第二行 低一字書大目…第三行 低二字書小目…第四行 低三行書次小目…而其中又有小目者 低四字書之” (필자는 차소목 아래 또 소목이 있는 경우 再次小目으로 이름하여 분석하였다.)

3, 혼례 16, 혼변례 8, 상례 66, 상변례 21, 제례 32, 제변례 15, 종법에 5, 잡례에 3 항목으로 총 183항목이다.<sup>67)</sup> 차소목과 재차소목의 수가 각각 1397, 293개의 방대한 구성으로서, 『가례』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항목이 포함되었고 그만큼 예가 세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 1> 『예의유집』의 항목 분포

권	대목	소목(차소목수-재차소목수)
권1	冠禮	總論, 冠禮父母昏禮主婚者異同*, 告祠堂, 將冠者服(2), 三加冠服(9), 陳設序位, 迎賓, 三加行禮之節, 醮禮, 字冠者, 冠者見父母, 禮賓
	冠變禮	將冠遇喪, 服中冠禮行廢, 國恤中冠禮*, 過家行冠昏之節
	附筭禮	總論, 筭禮諸節, 背子
권2	昏禮	總論, 嫁娶年歲先後, 不娶同姓, 異姓破族昏, 主昏, 冠禮父母昏禮主婚者異同, 不用問名納吉, 昏書式, 告祠堂, 納幣(3), 親迎(16-5) 見舅姑(2), 見尊長, 饋舅姑, 婿見婦親(3), 回昏禮
	昏變禮	將昏遇喪, 服中昏禮行廢, 國恤中昏禮*, 冒哀嫁娶之非, 禫月廢昏, 改葬時廢昏, 禍家行冠昏之節*, 失君父行昏之說*, 見舅姑(6), 廟見(2), 改娶(1)
권3	喪禮	總論, 初終(3), 復(5), 立喪主(10), 易服, 告喪, 治喪具(12-39)
권4	喪禮	沐浴(2), 襲(7), 爲位(4), 飯含(6), 靈座(5), 魂帛(3), 銘旌(15), 親厚入哭(1), 小斂(11), 代哭(1), 大斂入棺(12), 成殯(8), 居廬(2)
권5	喪禮	五服(7-37)
권6	喪禮	五服(11-31), 成服(13)
권7	喪禮	朝夕哭(1), 奠(9), 上食(19), 生辰, 弔慰(16), 奠酌(5)
권8	喪禮	葬期(2), 擇地(2), 治葬具(15-56)
권9	喪禮	窆(13), 題主(33), 成墳(2), 合葬(9), 返哭(7), 廬墓(3)
권10	喪禮	虞(38-6), 卒哭(34-5), 祔(46), 葬後諸節(12), 小祥(47-12), 練後諸節(6)
권11	喪禮	大祥(48-19), 祥後諸節(10), 禫(49-9), 禫後諸節(4), 吉祭(43-12)
권12	喪禮	居喪雜儀(20), 服中雜儀(8), 心喪諸節(4), 離喪次諸節(4), 書疏式(11)
권13	喪禮	喪中行祭(26), 五服變除(13)
권14	喪禮	父在母喪諸節(14), 出母嫁母喪諸節(2), 養父母喪諸節(5), 妻喪諸節(13), 長子喪諸節(3), 殤喪諸節(3), 爲人後者爲本生親喪諸節(19), 出嫁女本生親喪諸節(7), 妾子本生親喪諸節(6), 師友喪諸節(3),
권15	喪禮	國恤(22)

67) 구성 상 중복되는 소목은 개수에서 제외시켰다.

권16	喪變禮	聞喪(12), 奔喪(8), 追喪(20), 代喪(7)
권17	喪變禮	并有喪(49)
권18	喪變禮	途有喪(4), 喪中身死(3), 嗣子未執喪(4), 無嫡嗣喪(7), 無後喪(15), 過期之禮(4), 追行之禮(9), 追改之禮(5), 染患中喪禮諸節(8), 喪中遇變亂諸節(3), 被罪家喪禮諸節(1)
권19	喪變禮	草殯(3), 權葬(3), 改葬(23-26), 虛葬(1), 失君父(1)
권20	祭禮	總論, 廟祭世數(2), 廟制(2), 祠堂(3), 合櫃(1), 班附(12), 遺書遺衣(2), 祭田(1), 祭器, 影堂, 晨謁(5), 出入告, 祭(17-6), 俗節(6), 薦新(5), 生辰祭(3), 有事告(12), 家廟移奉*, 祠墓遇變*
권21	祭禮	時祭(40-16), 附土神祭, 初祖先祖祭, 禱祭(6)
권22	祭禮	忌祭(41-4), 墓祭(33-4), 附后土祭(3), 告墓省墓(4),
권23	祭禮	遷遷(17), 不遷之位(8), 別室藏主(12), 墓所藏主(2), 祧位歲祭, 支子諸禮(9), 妾子諸禮(6)
권24	祭變禮	臨祭有故(4), 喪中行祭*, 兩祭相值(5), 異居行祭(6), 祭祀攝行(4), 支子祭先(3), 次嫡奉祀(3), 妾子奉祀(7), 立後奉祀(4), 攝主奉祀(9), 侍養奉祀(2), 外孫奉祀(5), 出繼子祭本生親(4), 承重妾子祭本生母(2), 家廟移奉(3), 祠墓遇變(7)
附錄 상	宗法	大宗小宗之別, 傳重, 黜嫡(1), 嫁母子爲後, 支子祭先*, 次嫡奉祀*, 妾子奉祀*, 立後奉祀*, 攝主奉祀*, 立後諸節(23)
附錄 하	雜禮	居家雜儀(10-6), 堂室之制(3), 冠服之制(12)

<비고> \*는 중복되는 항목이다.

둘째, 변례를 대목으로 정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관혼상제의 사례서로 구성되었지만 각각 관변례, 혼변례, 상변례, 제변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복잡다단한 傳重과 立後의 문제는 종법으로 묶어서 부록으로 처리하였다.<sup>68)</sup> 종법에는 제변례, 상변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복되어 실려 있다. 변례는 예경에 나오지 않는 예로서, 변례를 합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유학자들의 중요한 사무 중 하나였다. 17세기 이래로 예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면서 예의 조목이 복잡해지고 변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변례에 대한 서술은 주로 16세기 말부터 등장하였다. 宋翼弼의 『家禮註說』에는 관변례, 혼변례, 제변례가 첨가되었다. 柳成龍의 『喪禮考證』(1602)에는 變禮

68) 『禮疑類輯』 「禮疑類輯凡例」 “一 此書既以四禮爲主…又以許多諸說混錄 則亦甚繁雜 故此則別爲附錄 而傳重立後名以宗法”

와 權制 항목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의 변례는 속례라든지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예서와 경전에 입각하여 두 가지 예가 겹쳐 일어나는 경우 등을 적은 것이다.<sup>69)</sup> 변례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는 鄭述의 『五先生禮說分類』(1611)에서 이루어졌다. 정구는 변례를 고증하기 위해 중국 송대의 오선생 즉 程顥, 程頤, 司馬光, 張載, 朱熹의 예설을 연구하고 분류하였다.<sup>70)</sup> 이후 『의례 문해』를 시작으로 『경례문답』, 『남계예설』 등이 모두 당시 조선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의유집』은 이러한 변례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례편람』이 행례의 표준을 제시했다면, 『예의유집』은 그것을 보완하여 예의 실천에서 문제시되는 변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의유집』은 찾아보기 편하게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문목을 나누고[分門] 조항을 세운[立條] 만큼 『가례』의 체제에서 상당히 벗어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로 별목을 넣거나 분류에 따라 옮기고 합치는 수정을 가하였다.<sup>71)</sup> 목차의 구성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五服을 분류한 방식이다.〈표 2〉 대부분의 예서들은 『가례』에 따라 斬衰, 齋衰, 大功, 小功, 緦麻의 오복을 항목으로 삼아 상복제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박성원은 이러한 방식이 직접 예를 행할 때는 매우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斬衰三年은 하나가 아니고 杖菴, 不杖菴도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대공, 소공, 시마 이하에 이르면 더욱 어지러워서 혹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복의 경중을 논하지 않고 모두 本宗에 속하는 것은 하나로 합쳐서 本宗服으로 항목을 삼”아서 찾아보기 편하게 하였던 것이다.<sup>72)</sup> 이러한 방식은 상복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69) 고영진, 1995 『조선중기예학사상사』, 한길사, 232면.

70) 『五先生禮說分類』(韓國禮學叢書 2)「序」“然而常禮惟一 變禮萬殊 雖在音博識之上 尙未免臨機滋惑 是非相眩 議論多歧 聚訟構嫌 至於舉天下而莫辨 積世代而留疑 其精微之難審 真是之莫睹 果如是哉 天相斯文 五星重明 有若兩程先生, 涑水先生, 橫渠先生與夫晦菴朱先生輩出迭興 大道以闡 宣揚人文 以禮爲本 隨事剖析 如指諸掌”

71) 『禮疑類輯』「禮疑類輯凡例」“今此類輯 只爲便於觀覽 故分門立條 不能盡從家禮之序 或隨事而添入別目…或以類而移此合彼”

72) 『禮疑類輯』「禮疑類輯凡例」“一 五服之制 當以斬衰三年杖菴不杖菴大功小功緦爲目 而斬衰三年者非一 杖菴不杖菴亦不一…或難於臨猝尋見 故勿論服之輕重 凡屬於本宗者 統以爲

사람도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쉽게 해당 상복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예의유집』의 항목 분류는 실제 예를 행할 때 활용하기 쉽게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예의유집』 五服 항목

대목	소목	차소목	제 차 소 목	
喪禮	五服	爲本宗服	齊斬之義, 父在爲母, 承重孫祖在爲母, 父喪中母亡服母, 母喪中父亡仍母服, 父有廢疾子承重, 父死喪中子代服, 父在母喪而子死者其子代服當否, 父喪中遭祖父母喪代服當否, 嫡孫死喪中無後庶孫代之, 爲高曾祖父母, 五代祖喪, 爲人後者爲所後會高祖, 夫爲妻, 父爲長子, 祖爲承重服, 祖爲孫, 爲長子婦, 爲嫡婦不爲舅後者, 爲宗子, 爲庶屬	21
		爲出母嫁母服	爲出母, 爲嫁母, 爲父後子爲出母嫁母, 嫁母出母爲其子	4
		爲養父母服	爲收養父母, 族屬不以收養恩加服	2
		爲慈母庶母服	爲慈母, 爲庶母	2
		爲殤服	三殤, 無服之殤, 嫡子不成殤者	3
		爲母黨服	母黨, 本生母黨, 出母繼母嫁母嫡母黨, 爲外先服窮者弔服加麻之非	4
		爲妻黨服	妻黨	1
		爲人後者爲本生親服	爲本生父母祖父母曾祖父母, 爲本生姊妹姑, 爲本生母黨, 爲人後者之子爲其父本生諸親, 私親爲人後者	5
		妻爲夫黨服	母爲長子, 母爲嫡婦不爲舅後, 爲父會高祖, 承重者妻從服及母與祖母服本木當否, 擊子承重則嫡孫婦不爲承重服, 爲父黨諸親, 爲本生舅姑祖舅姑, 爲父繼母嫡母養父母慈母, 爲父嫁母出母及庶子爲父後者之妻, 爲父所生母, 爲父庶母	11
		出嫁女爲本生親服	出嫁女爲父母祖父母, 爲兄弟爲父後者, 姊妹既嫁相服期之辨, 出嫁女爲諸親只降一等, 爲兄弟姪之妻, 爲從父兄弟之妻, 無夫與子與私親相服, 附) 妾爲私親服	8
		妾爲君黨服	妾爲君之父母, 妾爲君之黨, 妾爲女君之黨, 良妾相服	4
		妾子爲本生親服	妾子嫡母在爲所生母, 承重妾子爲所生母, 妾孫爲其父所生母	3
		兼親服		
		童子服		
爲師友服				
諸服有無同異辨				
總不降之誤				
式服服制之異				

本宗服爲目”

넷째, 예의 시행 절차에 맞추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喪葬諸具 등은 해당 절차보다 앞서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治喪具, 治葬具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앞쪽에 배치하였다.<sup>73)</sup> 또, 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중복해서 실어주고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원래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沐浴 후 復衣를 얹얹’ 襲斂 때 다시 쓰지 않음’ 등의 諸節은 모두 喪禮 復條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 사망하여 급한 상황에서 목욕과 습렴을 할 때는 위의 절차가 復條에 있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up>74)</sup> 따라서 해당 절차마다 중복해서 실어줌으로써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가례의 시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의유집』의 구성은 類書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75)</sup> 이것은 18세기 조선학계의 큰 흐름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서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지성사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특히 실학파의 博學名物學의 일환으로 지식의 대중화와 실증, 계몽이라는 학풍의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유서는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번잡하게 등장한 수많은 전적의 내용을 검비하고 종합하는 특징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복잡하고 착종한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질서화함으로써 읽고 인식하는데 편의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유서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6)</sup>

『예의유집』은 이러한 유서의 개념과 일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7세기 조선 예학의 발전을 토대로 확충된 다양한 예서와 예설을 집대성하였다는 점이다. 축적된 지식을 체계화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문목을 나누고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항목들을 대목-소목-차소목으로 정렬하는 방식이

73) 『禮疑類輯』 「禮疑類輯凡例」, “一 喪葬諸具 所當豫備 故先以治喪具治葬具爲目”

74) 『禮疑類輯』 「禮疑類輯凡例」, “一 各目中如喪禮復條 浴後去復衣 復衣不用襲斂等諸節 宜皆屬於復條 而初終急遽之時 臨浴當襲 或未知上款復條 有此說而忽易焉 故去復衣之說 則列於浴條復衣不用之說 則列於襲條 而於復條 則只書原目註 以詳見某條 他皆倣此”

75) 심경호는 전근대시기 한국 유서를 어휘 중심, 인물·일화 중심, 박물학적, 경학·성리학 관련 유서 등 10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유서 형태의 예서에 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경호, 2007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47)

76) 안대희, 2004 『李睟光的 『芝峰類說』과 조선 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98, 272면.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지봉유설』이나 『임원경제지』 등의 유서에 나타나는 상호참조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참조는 서로 연관된 지식을 표시해주는 것인데<sup>77)</sup> 상례 오복의 본종을 위한 상복[爲本宗服]에 속해있는 ‘아버지 상중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의 상복[父喪中母亡服母]’ 조항에는 “상변례의 ‘겹쳐서 상이 남’ 조항을 보라[見喪變禮并有喪條]”는 설명이 달려 있다. 또한 상례 오복의 위인후자가 본생친을 위한 상복[爲人後者爲本生親服]에 속해 있는 ‘위인후자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본생 제친을 위함[爲人後者之子爲其父本生諸親]’ 조항에서는 “제변례의 ‘출계인의 아들이 돌아와 본종을 계승함’ 조항을 참고하여 보라[與祭變禮出繼人之子還繼本宗條參看]”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78)</sup>

조선 예서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유서로는 정구의 『오선생예설분류』를 들 수 있다. 정구는 예학 연구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변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송대 오선생의 예설을 모아서 연구하고 분류하였다. 정구의 이러한 노력은 17세기 초 조선의 예학 수준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변례를 고증하기 위해 참고한 서적이 중국의 문헌뿐이었다는 것은 당시의 예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18세기에 이르면 조선의 예학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으면서 혼란해진 조선의 사회질서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예교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17세기는 예학의 시대라 불릴 만큼 많은 예설과 예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발전을 겪은 18세기 조선의 예학은 유서를 통해 지식을 체계화시켜야하는 필요에 당면하였던 것이다.

『예의유집』은 백과사전식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국의 독특한 현실을 지식으로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유서의 성격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의유집』이 18세기 조선에서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은 체계화가 필요할 만큼 양적·질적 발전을 이룬 조선의 예학이 있었

77) 이렇게 서로 연관된 지식을 표시해 주는 상호참조(cross-reference) 기능은 類書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조창록, 2009 『『임원경제지』의 찬술 배경과 類書로서의 특징』 『진단학보』108, 29면.)

78) 『禮疑類輯』 『禮疑類輯目錄上』

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조선후기의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의유집』에서 집대성된 예설은 이후 예 담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박성원은 학파를 넘어 가능한 한 다양한 예설들을 총망라하였다. 또한 저자의 견해를 최대한 배제하고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종의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학파의 예설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예담론의 질도 그만큼 향상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부터 近齋 朴胤源(1734~1799)은 여러 차례 『예의유집』의 先儒說을 인용하여 본인 예설의 근거로 제시하였다.<sup>79)</sup> 19세기 예설 논의에도 『예의유집』은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sup>80)</sup>

#### 4. 맺음말

박성원은 李緯의 제자로서, 많은 저술과 업적을 남긴 老論-洛論係 학자이자 문신이다. 언관으로 활동하면서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였고, 세손 시절 정조의 스승으로서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재의 심성론과 예학을 충실히 계승하여, ‘泉門’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었다. 그는 스승의 家狀과 年譜를 쓰며 문집 편찬을 주도하였고, 한원진의 『寒泉時』 비판에 대응하여 낙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또한 박성원은 이재의 예설을 중심으로 ‘천문’의 예학을 주도하였다. 이재의 喪禮부터 이재 집안의 次孫承重 문제, 자기 집안의 竝有喪 문제 등 變禮를 중심으로 예설 논쟁을 진행했다. 박성원은 “스승의 예설을 따른다”는 원칙하에, “적

79) 『近齋集』권13, (韓國文集叢刊 250), 書「與徐道卿」, “昨呈禮說 高意以爲如何 類輯更考 則有南溪答人一說”; 『近齋集』권16 書「答洪伯應」, “更按類輯 尤庵南溪 皆有斬衰中單衣不當緝之論 愚於此未敢自信己說”(또한 박윤원의 예설을 편집한 『近齋禮說』은 『예의유집』의 목차를 차용하였다.)

80) 『肅齋集』권3, (韓國文集叢刊 311), 書「答從子麟熙」, “此乃沙溪所引見禮疑類輯十七卷 喪變禮 并有喪條”; 『肅齋集』권4 書「上梅山洪先生」, “所謂南溪說之 載於類輯者一條 雖許其改題遞遷 而此何足議也”

통을 엄격히 한다”는 입장에서 차손 승중을 반대하였다. “주인 없는 상을 만드는 것은 의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손은 攝行만 할 뿐 반드시 적손에게 입후하여 承重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달아 喪을 당한 경우, 後喪의 大祥 후에는 前喪의 禫祭를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담제와 吉祭의 복장을 구분하는 이재의 예설을 근거로 禫祭는 길한 제사가 아니므로 喪中에도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상례비요』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컸으나, 박성원은 스승의 예설을 따르고 정당화하는데 집중하였다.

박성원은 이재의 조언을 바탕으로 총 26권 15책에 달하는 巨帙의 『예의유집』을 편찬하였다. 박성원은 조선의 예설이 ‘禮經’을 보충하여 變禮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조선학자의 예설만을 집대성하였다. 또한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항목을 나누고 제목을 정하는 類書의 체제를 적용하였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방대한 예설을 체계화하기 위해 ‘大目-小目-次小目’으로 항목을 배열하였다. 둘째, 變禮를 大目으로 정하여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8세기 예의 세분화에 따른 변례의 문제가 확대되었고 行禮 차원에서 변례의 고증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찾아보기 편하게 한다는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家禮』의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 별목을 만들거나 분류에 따라 옮기고 합쳐서 변화를 주었다. 넷째, 예의 시행 절차에 맞추어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喪葬諸具의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앞쪽에 배치하고, 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중복해서 실어주어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의유집』은 18세기 중반까지의 조선의 예설을 집대성한 예서로서, 조선의 지식이 고증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의유집』이 18세기 조선에서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은 체계화가 필요할 만큼 양적·질적 발전을 이룬 조선의 예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조선후기의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의 실천에서 문제되는 변례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유서의 형식에 따라 찾아보기 편하게 항목을 분류하는 체계적인 구성이 갖추어졌다. 유서의 성격을 갖는 예서의 편찬은 18세기 조선 사상계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예 담론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예서의 등장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예설에 접근하고 그만큼 담론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주제어 : 예학(禮學), 박성원(朴聖源), 예의유집(禮疑類輯), 유서(類書), 변례(變禮)

투고일(2012. 10. 10), 심사시작일(2012. 10. 19), 심사완료일(2013. 1. 11)

〈Abstract〉

A Study on the Ritual Theory of Park. Sungwon and the  
character of *Yeuiryujip*

Kim, Yun-jung \*

Park Sungwon(朴聖源) succeeded to the theory of Mind-Heart(心性論) and Ritual of Lee Jae(李紱). He focused on the discourse of the transformed rites(變禮) to follow the Ritual theory of Lee Jae. He emphasized the main line of descent, so opposed that second-grandson mourned for three years to his grandparents. Also, he maintained theory of Lee Jae for combination of Mourning Ritual.

Park Sungwon wrote the big volume of *Yeuiryujip* based on the the transformed rites(變禮). With segmentation of the ritual grew, historical research on its variations was actually very effective method to put the ritual into practice. *Yeuiryujip*, was organized with Chinese Classical Encyclopedias of the ritual discourse in Chosun for easy lookup. Publishing of such the ritual literature was coincide with the public thought of Chosun in 18th century. The study of ritual in chosun was getting progressed as the discourse of the transformed rites(變禮) was expanded in the 18th century.

**Key Words** : Study of Ritual(禮學), Park. Sung-won(朴聖源), *Yeuiryujip*(禮疑類輯)  
Chinese Classical Encyclopedias(類書), the transformed rites(變禮)

---

\*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